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5일 15시 01분



목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목차 | 2 |
| 이전 공지사항 | 3 |
|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연장 안내 | 3 |

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연장 안내

2021.04.12 조회수 10,148 등록자 관리자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담당자

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연장 안내

○ 적용기간: 2021. 4. 12.(월) 0시 ~ 2021. 5. 2.(일) 24시

○ 대상지역: 도내 전 지역

붙임

전라남도 방역조치 요약표 ('21.4.12. ~ 5.2.)

《완화 불가능한 조치》

▶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

※ 적서 볼드체(밑줄)로 작성된 부분은 1.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

| 구분 | 도내 1.5단계 지역 ['21. 3. 29.~ 4.11.] (거리두기 1.5단계+방역수칙 조정) | 도내 1.5단계 지역 ['21. 4.12.~ 5.2.] (거리두기 1.5단계+방역수칙 조정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① 모임·행사 | | |
| 사적 모임 | <p>▶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</p> <p>* (제외)</p> <p>① 직계가족(8인까지)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</p> <p>② 삼겹례(8인까지)</p> <p>③ 영유아(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)를 동반하는 경우(8인까지,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)</p> <p>④ 아동·노인·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</p> <p>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</p> <p>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</p> <p>⑦ 돌잔치 전문점</p> <p>-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</p> | ▶ 좌 등 |
| 기타 모임· 행사 | <p>▶ 집회·시위, 대규모 콘서트, 축제, 학술 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</p> <p>▶ 전사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, 100인 기준 미적용</p> <p>▶ (권고) 공공기관 주최 행사 100인 미만</p> <p>▶ (신고·협의) 500명 이상의 모임·행사는 자체적 방역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 신고·협의 승인</p> | ▶ 좌 등 |
| ② 다중이용시설 : 중점·일반관리시설 등 | | |
| 공통 수칙 | ▶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(상점·마트·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) | ▶ 좌 등 |
| 방문 |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|
|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전자출입명부 작성 관리 ▶ 노래음식 제공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| ▶ 좌 등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|

| 구분 | 도내 1.5단계 지역 [21. 3. 29.~ 4.11.] (거리두기 1.5단계+방역수칙 조정) | 도내 1.5단계 지역 [21. 4.12.~ 5.2.] (거리두기 1.5단계+방역수칙 조정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유흥 시설 5종, 홀덤편 (무도장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유흥종사자 포함) 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▶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(아크릴 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) ▶ 클럽,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(댄스홀/댄스플로어 운영금지) ▶ 헌팅포차,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·룸 간에 이동 금지 ▶ 주사위,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유흥종사자 포함, 수기명부작성 불가) ▶ 좌 등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콜라텍은 춤추기 금지 해제하며 아래 방역수칙 준수 의무 추가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: 0;"><콜라텍 추가수칙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물,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안내 •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및 안내(무도행위 시 장갑착용 권고) •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</div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좌 등 ▶ 무도장의 경우에도, '콜라텍' 방역수칙 적용 * 무도장 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로서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(볼룸댄스)를 할 수 있는 시설 |
| 노래 연습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수기명부작성 불가)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이용자(손님)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(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) |
| 실내 스탠딩 공연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음식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| ▶ 좌 등 |
| 식당. 카페 (무인 카페 포함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 ▶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%만 활용하되,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②테이블 간 칸막이/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▶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사수저 등 사용 전 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| ▶ 좌 등 |

| 구분 | 도내 1.5단계 지역 [21. 3. 29.~ 4.11.] (거리두기 1.5단계+방역수칙 조정) | 도내 1.5단계 지역 [21. 4.12.~ 5.2.] (거리두기 1.5단계+방역수칙 조정) |
|-----|--|--|
| 파티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 (개별 방 면적대비 8㎡당 1명) ▶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 | ▶ 좌 등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| 이불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㎡이상) | |
| 실내체육시설 (실내 겨울 스포츠 시설 포함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(예외적용)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 적용(실내외 사설 경기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, 출입 명부작성, 마스크 착용, 손 씻기 및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) | ▶ 좌 등 |
| 학원·교습소 (독서실 제외) 직업훈련기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▶ (권고) 음식물 섭취 자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|
| 결혼식장 |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 ▶ 좌 등 |
| 장례식장 |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 ▶ 좌 등 |
| 목욕장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| ▶ 좌 등 |
| 영화관 | ▶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▶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|
| 공연장 | ▶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▶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|
| PC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▶ (권고) 칸막이가 설치된 곳에서 음식물 섭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▶ 음식 섭취 금지(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|
| 오락실 멀티방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(권고) 음식물 섭취 자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|

| 구분 | 도내 1.5단계 지역 [21. 3. 29.~ 4.11.] (거리두기 1.5단계+방역수칙 조정) | 도내 1.5단계 지역 [21. 4.12.~ 5.2.] (거리두기 1.5단계+방역수칙 조정) |
|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독서실 스터디 카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▶ 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 ▶ (권고) 칸막이가 설치된 곳에서 음식물 섭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▶ 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,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) |
| 놀이 공원·워터 파크 | ▶ 수용가능인원의 50%로 인원 제한 | ▶ 좌 등 |
| 이·미용업 | ▶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| ▶ 좌 등 |
| 백화점 대형 마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▶ 마스크 착용 ▶ 주기적 환기·소독 | ▶ 좌 등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|
| 마트·상점 (300㎡ 이상) | ▶ 마스크 착용 ▶ 주기적 환기·소독 | ▶ 좌 등 |
|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| | |
| 숙박 시설 | ▶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▶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 금지 ▶ 숙박시설 주관 파티·행사 개최 금지,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▶ 객실 정원관리 철저,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| ▶ 좌 등 |
| 국공립 시설 | ▶ 경륜·경마·경정·카지노 20% 이내로 인원 제한 ▶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% 이내로 인원 제한 | ▶ 좌 등 |
| 전시 회장·박람회장 |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| ▶ 좌 등 |
| 국제 회의장 |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 ▶ 좌 등 |

| 구분 | 도내 1.5단계 지역 [21. 3. 29.~ 4.11.] (거리두기 1.5단계+방역수칙 조정) | 도내 1.5단계 지역 [21. 4.12.~ 5.2.] (거리두기 1.5단계+방역수칙 조정)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사회복지 이용 시설 | ▶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(세부수칙 별도 송부) | ▶ 좌 등 |
|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| | |
| 마스크 착용 의무화 | ▶ 중점·일반관리시설, 집회·시위장, 대중교통, 위료기관·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·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·행사,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| ▶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, 위반 시 과태료 부과 |
| 교통 시설 이용 | ▶ 마스크 착용 | ▶ 좌 등 |
| 스포츠 관람 | ▶ 30% 이내로 관중 입장 | ▶ 좌 등 |
| 등교 | ▶ 밀집도 2/3 준수 | ▶ 좌 등 |
| 종교 활동 | ▶ 정규 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좌석 수 30% 이내 인원 참여 ▶ 종교시설 주관 모임·식사 금지 * 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·행사 금지 | ▶ 좌 등 |
| | ▶ 공공기관은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,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·회식 자제 |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|
| 진단장 근무 | <p>* 치안·국방·외교·소방·우편·방역·방송·산업안전·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밀폐·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)은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-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<p>▶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/3 이상(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)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</p> | ▶ 좌 등 |
|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|

첨부파일

[전체\(Zip\)다운로드](#)

- H 20210412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방역조치 비교표.hwp (262 hit/ 77.5 KB)

↓
[미리보기](#)
- H 20210412 행정명령서.hwp (240 hit/ 43.5 KB)

↓
[미리보기](#)
- H [보도참고자료]_수도권_등_2단계_지역은_유흥시설_집합금지.hwp (229 hit/ 823.5 KB)

↓
[미리보기](#)
- H (210409)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.hwp (272 hit/ 570.5 KB)

↓
[미리보기](#)
- ZIP 전라남도 주요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zip (178 hit/ 534.4 KB)

↓

목록

이전글

여수형 중소기업 인력양성, 일자리 잡아유(job a...

다음글

2021년「섬 배울 학교」상반기 참여자 모집

Yeosu Web Contents

